

지급보증의 보증약관(시중은행용)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회사”라 함은 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해외건설공사 관련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보증회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해외건설공사 관련 지급보증(이하 “지급보증”이라 한다)을 실시(기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보증기한과 지급보증기한과의 관계) ① 지급보증의 기한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한 이내이어야 합니다.

- ② 지급보증기한이 당초기한보다 단축된 때에는 보증회사가 따로 통지를 아니하더라도 이 보증서의 보증기한은 지급보증기한의 단축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통지의무)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보증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지급보증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 사후가 해소되었을 때

5. 지급보증의 금액,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5조 (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 보증사고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화에 의한 통지 후 지체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지급보증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 청구를 받은 때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2. 보증채권자가 지급보증의 상대방에게 대지급한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 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4. 보증채권자의 지급보증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5. 보증채권자의 지급보증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유가 전부 해소되어야 합니다.

제6조 (지급보증 취급 시 유의사항) ① 보증채권자가 지급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지급보증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보증회사가 주채무자를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로 지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한 때

제7조 (회수금의 변제충당) ① 보증사고 발생후 주채무자로부터의 회수금은 지급보증 이외의 채권, 지급보증의 채권 순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채무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의 변제충당에 있어서 회수금을 보증회사와 타보증(보험)기관이 함께 보증한 지급보증에 충당할 때에는 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보증(보험)기관별 보증채무잔액에 비례로 안분하여 충당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 보증채권자는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경우 그 대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1. 지급보증의 보증 채무이행청구서
2. 지급보증의 보증서 사본
3. 대지급관련 서류 사본

4. 기타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보증회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9조 (보증법위) ① 보증회사는 제5조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대지급한 경우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차감합니다.

- ② 보증회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1항의 대지급금 지급시까지 주채무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정상보증료 해당액

2.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이율 6%로 계산한 이자

3.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내규에서 정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4. 보증채권자가 지급보증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

제10조 (지급보증의 보증 채무이행방법 등) ① 지급보증의 보증채무이행장소는 이 보증서를 취급한 보증채권자의 영업점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지급보증의 보증 채무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증회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지급보증의 보증서

3. 기타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11조 (구상 및 담보대위) ①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대위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채무 이행전이라도 보증회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보증회사에게 담보물의 절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증회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환율) 다음 각호의 금액이 원화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1. 제9조 제1항의 보증원금 : 보증채권자가 대지급한 날의 대고객전진환매 도율

2. 제9조 제2항 제3호의 제반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대고객전진환매 도율

제14조 (면책사항)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이 보증서 앞면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지급보증을 취급한 경우

2. 보증회사의 동의 없이 이 보증서 발급 전에 지급보증을 취급한 경우

3.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지급보증을 취급한 경우

4.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급보증을 취급한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회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제5조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회사의 채권 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제15조 (면책범위) 보증회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4조 제1호 내지 제4호 : 보증금액 전액

2. 제14조 제5호 : 담보해지 및 훼손에 따른 회수불능 금액

3. 제14조 제6호 : 채권보전장애를 받은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제16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보증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② 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